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  
회사법인\_퓨어마인드감국]

1. 우리 청 관내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 · 판매한 "퓨어마인드감국"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 · 폐기(그 밖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유효기간)	위해등급	회수사유		
			시험항목	결과/기준(ppm)	판정
퓨어마인드 감국	PM004CN_19JAN17 (2020.1.18.)	2등급	성상	기원식물부적합 (국화임)	부적합

2.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 ·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명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약정책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법무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소비자원

주무관

이종규

의료제품안전 전결 2019. 5. 22.

과과장 이재근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 안전과-4437

(2019. 5. 22.)

이재근 성장이 접수 복지입니다.

우 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http://www.mfds.go.kr

의료제품안전과 (이곡동)

1 - 1문서관리카드 1 - 1문서관리카드의료제품안전과-3852 1 - 1

## <의약품 회수 안내문>

###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이종규	053-589-2754	053-592-2711
회수사유	○ 품질[성상] 부적합		회수등급	2등급

###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안완산길 32		
전화번호	054-337-6550	FAX번호	054-332-8660

###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퓨어마인드 감국	분류	의약품
주원료	감국		
효능·효과	조제용 또는 제조용		
포장단위	자사포장단위	제조번호	유효기간
		PM004CN_19JAN17	2020. 1. 1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 39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  
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  
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  
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 . 5. 2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